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6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강득구·이학영·박지혜

송재봉 • 한민수 • 김용민

조정식 • 박희승 • 민병덕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합당·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등).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 2.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 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 ②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 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당원의 교육)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활동, 당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당은 이 법 시행 이후 90일 이내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규정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 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 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 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 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 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 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하다. 2.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 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 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 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 로부터 나온다. ②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 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의 기재사항) ① (생 략)

-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 ②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 5. ~ 11. (생략)
- ③ ④ (생 략)

<신 설>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③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 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 11.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당원의 교육)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 ·활동, 당원의 권리·의무 등 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 다.